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변화 연구

김준영*, 권다옥*, 박정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e-mail:jykim@krit.re.kr

A Study on Cost Analysis by Defense Cost Structure Improvement

Joon-Young Kim*, Da-Ok Kwon*, Jeong-Nam Park*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요 약

국가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제도,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계산 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에서는 기존 방산원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물로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 규칙 및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비용분석 결과 및 업무 등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향후 시행예정인 시행세칙 등에 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비용분석 업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국가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은 자주 국방을 위 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절충교역 제도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수준 향상 및 주요 무기체계 수출 등 큰 성 장을 이루었다.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방위산업은 방위 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 방위산업 은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수요가 제한적이고, 방산물자의 연 구개발 및 생산을 위해 설비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예산 및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제도,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계산 시 인센티 브 적용 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2]. 하지만, 기존 방산원가구조는 방산업체 실 발생비용에 이윤 을 적용하여 원가를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져 업체 자체 적으로 원가절감을 유인하기가 어려웠으며, 연구개발 투자확 대와 수출활성화를 위해 원가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3]. 이런 배경 하에, 방위사업청에서는 기존 방산원가구조 개 선을 위해 2019년도에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발족하였 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 규칙 및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획득비용 추정 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 등에 따라 비용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무기체계 비용분석 결과 및 업무 등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산원가제도 개선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비용 분석결과 및 비용분석 업무 변화 등을 분석

이후 본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와 더불어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변화를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업무 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하고자 한다.

2.1.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제도

방산물자 원가계산 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과한 규칙' 등에 따라 원가가 산정되며, 해당 규칙에 따르면, 원가 구성요소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제조원가는 원가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제조직접비로, 두 종류 이사으이 제품에 배부하여야 하

는 제조원가는 제조간접비로 구분되며,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4].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를 중심으로 원가가 산정되며, 간접비는 방위사업청에서 기 산정된 방산 제비율에 따라 직접비와 연계하여 도출되는 구조이다.

2.2. 방산원가구조 개선 주요내용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성실성 추정 원칙 개념 적용, ② 표준원가 개념(방산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적용) 도입, ③ 이윤 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④ 수 출 확대 방안 고려, ⑤ 연구개발에 투자 촉진, ⑥ 원가업무 합 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5].

3. 비용분석 결과 변화

방산원가구조 주요 개선사항과 방산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비 등 항목별 연계성 및 영향력을 분석할 결과, 노무비 및 이윤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 노무비 관련 비용분석 결과 변화

기존에는 노무단가로 업체별 임률을 적용하였으나, 그룹별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며, 용역 부문의 경우,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반영하였으나, 간접노무비 항목이 삭제 또는 제경비 항목으로 통합 반영되었다. 따라서, 용역 내 간접노무비 항목 영향으로 노무비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이윤 관련 비용분석 결과 변화

제조 부문의 보상률 상승¹⁾·명확화²⁾ 및 용역 부문의 이윤률 상승³⁾ 등으로 이윤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비용분석 업무 변화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라 제조 부문은 기준노임단가를 통한 업체별 임률·임금상승률 적용 및 위험보상률 명확화 등이이루어졌으며, 용역 부문은 원가구조가 단순화되었다. 이에따라, 비용분석 업무는 좀 더 효율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및 업무수행 변화를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시행예정인 시행세칙 등에 대한 사전 준비와 더불어 비용분석 업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현재 산정 중인 그룹별 방산노임단가 자료가 확보되면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방위사업법
- [2] 설지운·이호영, "방위산업체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제 34권 2호, pp. 227-259, 2019년.
- [3]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2019년 3월 10일.
- [4]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1049호.
- [5]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2019년 7월 10일,

¹⁾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에 곱하던 기본보상률의 조정계수는 기존 0.25 (중소기업 0.3)이었으나, 경영안정보상률로 명칭 변경 및 0.65(중소기업 0.7)로 상향

 ²⁾ 획득방안(기술협력 0.5% ~ 연구개발 1.5%) 및 계약방식(중도확정 1.0% ~ 원가절감 3.0%)에 따라 위험보상률을 적용하였으나, 통합하여 수정(기술협력 2.0% ~ 연구개발 6.0%)

³⁾ 제조 부문과 동일하게 산출하던 방식에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의 33% 또는 37% 적용으로 변화